

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안내

- 충북진천 국민임대주택 -

※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제출서류인 **주택우선공급 확인서** 발급을 위한 안내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급개요(입주자 모집공고)

- 공급 위치 :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65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80호
- 배정 호수 : 1세대(29A)
- 공급 일정 : [입주자 모집공고] 24. 4. 26.(금)
[청약 신청접수] 24. 5. 8.(수) 09:00 ~ 5.14.(화) 17:00

2. 대상요건

-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 - * 제외업종 : ①일반유희 주점업 ②무도유희주점업 ③기타 주점업
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
-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(동일한 중소기업 근무일 경우 3년 이상)인 자
-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(대표자 및 법인 임원* 제외)
 - * 다만, ①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)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(급여수령)시 이사 및 감사 신청 가능
-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
 - *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,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이어야 함
- 충북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, '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'을 충족하는 자(사업주체 공고문 참고)

3. 신청 안내(주택우선공급 확인서 발급)

□ 신청기간 : 24. 4. 29.(월) ~ 5. 27.(월) 18:00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
*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<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>) → 알림마당
→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→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

□ 제출서류 : 3페이지 참고(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)

4. 유의사항

□ 「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확인함

□ 청약자격 요건은 신청 전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함

□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이어야 하며, 중소기업 재직여부 및 기업규모 판단 불가능시 대상요건 불인정

※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소득자용)을 참고하여 기재(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)

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‘무주택 세대구성원’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

□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‘청약자격 확인 - 주택소유 확인’을 통해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

* 무주택 판단기준 및 청약제도 제반 사항 문의 : 국토부 민원 콜센터(1599-0001)

** 제출서류가 아닌 확인사항임

□ 주민등록법령 위반,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취소

□ 기타 세부사항은 「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71호(2023.1.1.시행))」, 운영매뉴얼, 기관추천 우선공급 신청 안내문 참고

※ 문의처

확인서 발급 (충북중기청)	043-230-5367	청약, 무주택 요건	1644-7445, 1599-0001
입주 관련 (LH콜센터)	1600-1004	시스템오류	1661-7616

- ◆ 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대상자 요건 확인 등이 불가하여 신청 제외될 수 있음

※ 단, 법인등기부등본(3개월 내), 사업자등록증은 발급기간 예외

□ 기본 제출서류

1.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

*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: www.4insure.or.kr

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

* 국민건강보험(www.nhis.or.kr),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에서 발급 가능

☞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
(내역에 없을시 근무경력 불인정)

3. 사업자등록증

4.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, 임원에 관한 사항 포함)

5.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)

*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,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제출

6. 가족관계증명서

7. 주택우선공급 서약서

8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9.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* 동의시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명, 법인등기부등본, 재무제표 제출 不要

10.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또는 감사인 경우)

※ 그 외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**확인서 발급과 무관**하므로, 신청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」)

- (제1호)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,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,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 확인서류
- (제2호) 국토부 '씨리얼'*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, 신청자의 초본, 기본증명서

* 씨리얼 홈페이지 : seereal.lh.or.kr

- (제3호)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'주택판매' 또는 '분양'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, 분양을 완료(소유권 이전) 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
- (제4호) 현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음
- (제5호) 건축물관리대장(면적), 분양계약서(전용면적)
- (제7호) 폐가 사진, 공과금 증빙(물, 수도, 전기 등 사용 내역 없어야 함), 멸실신고에 따른 멸실등기
- (제8호) 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
 - * 건축물이 위치한 지자체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
- (제10호)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형별 경쟁률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

※ 무주택기간 증빙서류 발급 방법

- 건물등기부등본 : 무인발급기, 등기소,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
- 건축물관리대장 : 구청, 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24 홈페이지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: 구청,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